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0486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0. 28.

주 문

1.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2,332,680원의 부과처분 중 1,755,7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가산세 14,024,570원의 부과처분 중 3,511,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 내역 기재 각 세목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창업

원고는 2010. 11. 11. [redacted]구[redacted]동 [redacted]에 본점을 두고 '스텐레스 및 특수강 수출입 및 판매업, 엘보 및 후렌지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1. 1. 1.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목을 스텐레스 및 특수강, 엘보 및 후렌지 가공으로, 업태를 도매 및 제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의 부동산 등 취득 및 취득세 면제

1) 원고는 2011. 8. 22. 대전지방법원 A, B(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소유였던 [redacted]군 D 외 [redacted]필지 지목 공장용지 및 대지 면적 합계 154,1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토지 지상 공장건물 및 부속건물 33개 동 연면적 합계 42,871.97㎡(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및 위 토지 및 공장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및 구축물(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을 매각대금 30,311,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등을 취득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당시 과세관청인 충남 연기군수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

1) 피고는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서면신고조사 방식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2013. 5.경 원고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2)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고, 원고로부터 2013. 11. 2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아 2013. 12. 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하고 2013. 12. 26. 그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등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등의 취득금액 30,311,000,000원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장치 등의 취득금액 3,709,000,000원을 제외한 26,602,000,000원(= 30,311,000,000원 - 3,70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가 면제받았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각 그 가산세를 부과·징수 하였다(이하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세목별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 합계액	총합계액
취득세	1,064,080,000	212,816,000	33,837,740	246,653,740	1,310,733,740
농어촌특별세	53,204,000	10,640,800	1,691,880	12,332,680	65,536,680
지방교육세	106,408,000	10,640,800	3,383,770	14,024,570	120,432,570
합 계	1,223,692,000	234,097,600	38,913,390	273,010,990	1,496,702,990

라.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

원고는 2014. 3. 4.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등을 취득한 2011. 8. 22.부터 2년 이내인 2013. 8. 22.까지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이 된 경우, 원고는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2013. 8. 22.부터 30일 이내인 2013. 9. 21.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피고가 위 2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3. 4. 23.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미 2013. 9. 21. 이전인 2013. 5.경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등의 취득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점거하고 있던 이전 소유자 C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2012. 3. 1. 공장을 인도받았으므로,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2014. 3. 1.까지 취득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30일 이내인 2014. 4. 1.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피고가 이미 2014. 1. 9.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여 그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기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연체이자율'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1. 30.까지 징수유예를 받아 유예기간 내인 2014. 11. 26. 취득세 등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납부하였으므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기일까지의 기간이 없어 가산세를 적용할 기간이 없다.

② 가사 납부기한이 징수유예기간 종기 이후로서 피고가 고지한 2014. 12. 1.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2013. 12. 26.이어서 그 30일 이내인 2014. 1. 26.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그 기간 내인 2014. 1. 7. 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를 지연한 기간이 없어 가산세를 적용할 기간이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추징하기 위한 과세요건에는 해당 사업용재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 2년의 경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로(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 등 참조),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사업용재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등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2013. 8. 23. 당시의 관련 지방세 및 조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3. 8. 23. 적용되던 구 농어촌특별세법(2014. 1. 1. 법률 제12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종합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취득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데, 국세기본법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3조,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53조의4를 종합하면,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한 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들 본세에 대하여 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취득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신고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경 피고의 세무조사에 응하면서 2011, 2012년도의 법인 소유자산으로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기계장비 등과 그 취득일자, 장부가액 등이 기재된 법인소유자산 관련 증감명세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가 그 신고기한인 2013. 9. 2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등을 기재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세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본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C는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8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09. 10. 20.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09. 11. 13. 위 법원 2009하합99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1. 8. 22. 이 사건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등을 매수한 후,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 2011카기1304호로 C 소속 근로자 E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 한편 C의 대표이사였던 F은 2011. 12. 1. C의 근로자 481명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내의 설비 중 일부 유체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임금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G, E와 사이에 위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G, E는 2012. 10. 22.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5495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사건 양도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내 전자현미경, 3D 조도계, 잉크농도 측정기 등 53개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은 2013. 4. 25. 위 유체동산 중 석조 해태상 암·수는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유체동산은 여전히 파산자 C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국 F이 근로자들에게 위 유체동산을 양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G, E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G,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14. 확정되었다.

㈐ 또한 G, E는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116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건물 내 전자현미경, 3D 조도계, 잉크농도 측정기 등 53개 유체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점유이전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이하 '1차 가처분'이라 한다).

위 가처분 결정은 2013. 4. 24.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1335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위 본안소송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다.

㈑ G, E는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129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건물 내 독타 브레이드(닥터 블레이드)[1], 자동모터 절단기, 식당비품 등 유체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점유이전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위 가처분 결정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604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위 유체동산은 1차 가처분 결정의 목적물의 일부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본안소송과 같은 이유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1) 닥터 블레이드(Doctor Blade)는 금속이나 수지로 만들어진 얇은 판으로 조형판의 요철 부분에 잉크를 밀어 넣고 여분의 잉크를 긁어내는 역할을 하는 인쇄기의 소모성 부품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 G, E는 2013. 1. 2.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9435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건물 내 지게차 등에 관하여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위 가처분 결정은 2013. 7. 18. 대전지방법원 2013카단4429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G, E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 [redacted]시 세정담당관은 2013. 10. 28.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 소재지에 출장하여, H로부터 공장취득 후 생산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공장 내부와 관리동 건물이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③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2011. 10. 10.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등의 인도를 집행할 수 있는 인도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C 소속 근로자들이 점거한 것은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전체가 아니라 노조 사무실에 한정되고, 2012. 3. 1.부터는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3. 10. 28.까지도 아무런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점, ㉯ C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본안소송 및 가처분 관련 보전소송의 목적물도 원고가 이 사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과는 별개의 물건인 유체동산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점, ㉰ 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면적 합계 154,120㎡인 이 사건 토지 및 연면적 합계 42,871.97㎡인 이 사건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3차례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걸친 가처분의 목적이었던 유체동산들을 이 사건 토지나 공장건물의 적당한 곳에 보관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원고의 취득목적에 따라 사업에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취득세 본세의 부과처분에는 다투지 않고 이미 납부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C 소속 근로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인 엘보 및 후렌지 제조 및 가공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신고기간 내 취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본다.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사업용재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되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등 참조),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로부터 신고기간인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아니라면 이를 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취득세 추징을 위한 과세 기준일은 2013. 8. 23.인데, 그와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취득세 추징을 위한 과세 기준일이 2014. 3. 1.이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2)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징수유예결정으로 납세의무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이 정한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징수유예의 효력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징수유예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할 기한이 2013. 9. 2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자진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납기일을 2014. 2. 3.까지로 하여 취득세 등 1,496,702,990원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징수유예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4. 2. 3.부터 2014. 7. 31.까지 징수유예결정을 하였다가 2014. 7. 28. 다시 징수유예기간을 2014. 2. 3.부터 2014. 11. 30.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징수유예결정은 자진신고납부기한 경과 이후의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전적부심사로 납세기한이 도래하지 않는지 여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모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구 지방세법 제20조 1항,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제152조 참조), 납세의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때에는 과세권자는 미신고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53조 제2항 참조).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납세의무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구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6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사건에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13. 9. 21.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이 2014. 1. 26.이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다.

○ 취득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본세: 1,064,080,000원(취득가액 26,602,000,000원×4%)

-가산세 합계액: 247,930,640원(212,816,000원+35,114,640원)

무신고가산세: 212,816,000원(1,064,080,000원×20%)

납부불성실가산세: 35,114,640원

(1,064,080,000원×3/10,000×납부기한 다음날인 2013. 9. 22. 부터 납세고지일인 2014. 1. 9.까지 110일)

○ 농어촌특별세

- 본세: 53,204,000원[(26,602,000,000원×2%)×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755,730원(53,204,000원×3/10,000×110일, 10원 미만 버림)

○ 지방교육세

-본세: 106,408,000원[26,602,000,000원×(40/1,000-20/1,000)×20%]

-납부불성실가산세: 3,511,460원(106,408,000원×3/10,000×110일, 10원 미만 버림)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이므로 적법하나,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판사 고진흥

판사 정유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부과 내역

세목별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 계
취득세	1,064,080,000	212,816,000	33,837,740	1,310,733,740
농어촌특별세	53,204,000	10,640,800	1,691,880	65,536,680
지방교육세	106,408,000	10,640,800	3,383,770	120,432,570
총 계	1,223,692,000	234,097,600	38,913,390	1,496,702,9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 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이하 생략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신고 및 납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 서식: 생략)

■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 농어촌특별세법(2014. 1. 1. 법률 제12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제7조(신고·납부 등)

④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0조(국고납입)

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④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본세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 그 가산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고·납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부과·징수)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타. 농어촌특별세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이하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1

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